

2020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

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

1. 목적

이 규정은 기존의 학력위주의 평가 방법을 벗어나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, 졸업 수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게 적격자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방침

- 가. 본 계획은 2020학년도 졸업생 시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 시행한다.
- 나. 전주부설초등학교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, 시상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사기를 고양하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성취동기를 부여한다.
- 다. 교과 성적 위주의 결과물 산출을 통한 줄 세우기를 지양한다.
- 라. 졸업 사정 기간(2020년 3월 1일~2020년 12월 31일) 내 본교 6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.
- 마. 특별한 자격이나 공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시상하는 것은 지양한다.
- 바. 청소년 단체와 관련한 표창 및 기타 수익자 부담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시상은 개별 단체에서 별도 관리한다.
- 사. 당해 연도 학교폭력대책심의(소)위원회를 통해 4호(사회봉사)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시상에서 제외한다. 단, 1호(서면사과)~3호(교내봉사)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졸업사정 기준일 이후에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를 열어 시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3. 운영

가.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

- 1) 구성: 교감(위원장), 교무부장(간사), 연구부장, 6학년 담임 3명 등 총 6명
- 2) 임무: 졸업생 시상에 관하여 심의한다.
- 3) 임기: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- 4) 소집: 당해 연도 3월~4월 사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졸업생 시상 규정을 성립한다. 필요시에는 학기 중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5) 결정공고: 졸업생 시상 규정 성립 후 그 결과를 6학년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공고한다.

나. 상장 수여

| 영역 | 기 준 |
|-------|---|
| 총장 표창 | 학교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여 그 공적이 인정되는 학생 -전교어린이회 1학기 회장(1명): 모범어린이 표창(5월중) -전교어린이회 2학기 회장(1명): 총장 표창 |
| 공로상 | 학교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여 그 공적이 인정되는 학생 -전교어린이회 1, 2학기 6학년 부회장(2명) |
| 꿈바라기상 | 개인별 특기와 재능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을 정하여 전 학생에게 수여 |

다. 장학금 수여

| 순위 | 구분 | 기준 |
|----|---------|--|
| 1 | 가정환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정형편이 어려움(소년소녀가장, 기초생활보호대상자, 차상위, 한 부모가정 등)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봉사정신이 남달리 강하여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되는 학생 가정형편의 어려움은 구체적 자료(주민자치센터 조사 자료 등)를 기준으로 함 |
| 2 | 담임교사 추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별한 경우(구체적 자료가 없지만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등의 경우) 담임 추천서 가능 |

- 1)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관의 수상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르며, 특별한 기준이 없을 시 위의 본교 자체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.
- 2) 졸업생 1인당 장학금 지급은 20만원을 넘지 않는다.
- 3) 위 기준에 의해 장학금 수여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, 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 및 시행한다.

4. 시행규칙

- 가. 규정 이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나. 조기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교무부장이 보관한다.